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 연장 안내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8조, 제190조
2.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적기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는 바,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반영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 '21.6월말까지

- (변경) '21.7월말까지 (1개월 연장)

* 보고기한은 측정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공정 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계획은 측정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20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각 1개월씩 연장한 바 있음

3. 참고로, 올 하반기부터는 기한연장 없이 정상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니 이점 유념하시어 제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 안내공문 예시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지방관서(산재예방지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무관

최성필

행정사무관

김용욱

산업보건과장

전결 2021. 6. 18.

김정연

협조자

시행 산업보건과-2706

(2021. 6. 18.)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11동 고용노동부 7 / www.moel.go.kr
총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44-202-7747

팩스번호 044-202-8093

/ ehschoi@korea.kr

/ 대국민 공개